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6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추경호·정진석·김진표

홍준표 • 권영세 • 이명수

윤재옥 · 김석기 · 김성원

이양수 · 이철규 · 송언석

권은희 · 이태규 · 강대식

金炳旭・김승수・김용판

김예지 · 백종헌 · 서일준

안병길 · 유경준 · 윤창현

이 영·조수진·조태용

전주혜 • 정경희 • 정희용

허은아 · 황보승희 · 임호선

조정훈 의원(34인)

제안이유

행정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을 직권면직 하는 경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과 「별정직공무원인사규칙」(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사전에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면직대상자가 면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하지만,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의 경우에는 「국회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국회규칙)의 적용을 받아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 게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면직처리가 되고 있음.

이와 같은 보좌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충실한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면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보좌직원의 고용안정성을 낮추고,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조차 확보할 수 없어 유능한 인재의 유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 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후반부에 규정하고 있어 의정 활동 지원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이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와 같이 보좌직원에 대해 직 권면직을 하려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보좌직원의 임 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전반부에 배치하여 체계를 재조정함으로써 보 좌직원의 고용안정성과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보좌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전반부에 배치함.
- 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원의 직무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규정에서 밝힘(안 제1조).
- 다.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 직

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국회사무총장이 면직 예고를 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라. 국회의원이 직권면직요청서를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 수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법률 제 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 제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3.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으로서 그 국회의 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 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2.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3.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5조(면직 예고) ①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면직대상자, 면직일 및 면직요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이하 "직권면직요청서"라 한다)을 그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좌직원이 고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회사무총장은 직권면직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이 직권면직요청서를 해당 보좌직원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면직된 보좌직원에게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신고 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

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제9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7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10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 제11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12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 ②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 제13조(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4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5조(상해·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163조제1항제3호 중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좌직원의 정원

| | 보 좌 직 원 | 정 원 |
|------------|--------------------|-----|
| 보 3 |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2명 |
| 日) | 서 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2명 |
| 비 | 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
| 비 | 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
| 刊 | 서(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
| 刊 | 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

[별표 2]

수 당

| 내 역 | 구 분 | 지 급 액 |
|-----|-------|------------|
| | 국회의장 | 1,496,000원 |
| 수 당 | 국회부의장 | 1,275,000원 |
| | 국회의원 | 1,014,000원 |

[별표 3]

입 법 활 동 비

| 내 역 | 지 급 액 |
|-----------|------------|
| 입 법 활 동 비 | 1,200,000원 |

[별표 4]

특 별 활 동 비

| 내 역 | 지 급 액 |
|-----------|------------------|
| 특 별 활 동 비 | 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